

2019년 인권경영 추진계획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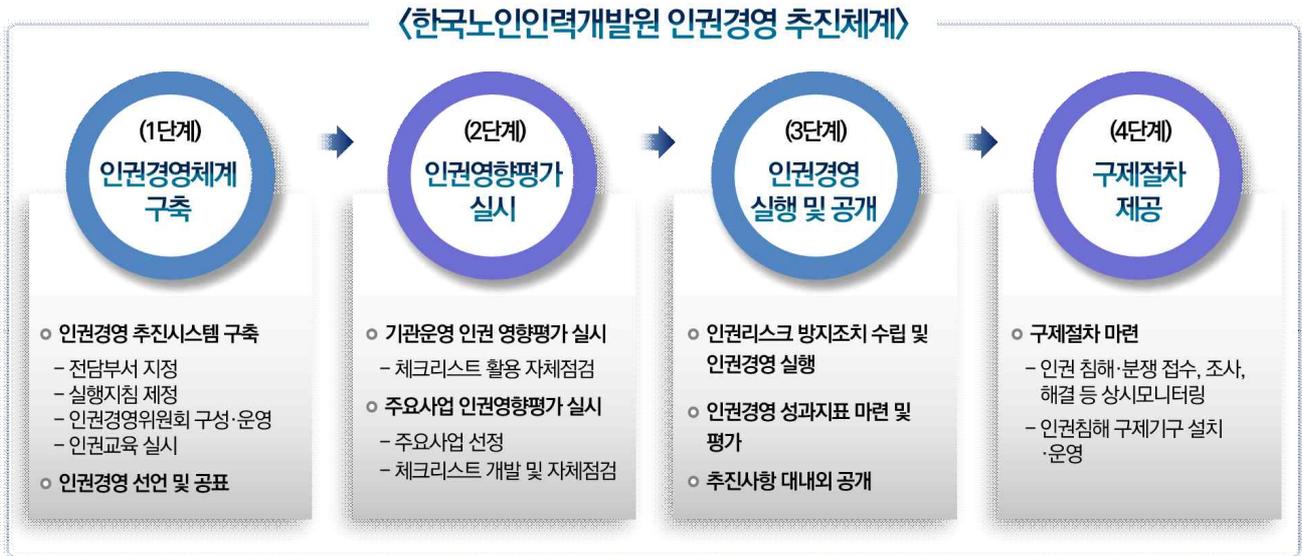
□ 추진배경

- (국제추세) UNGC 원칙* 이행, ISO26000**의 인권 준수 등 전세계적으로 인권보호 및 준수에 대한 요구 증가
 - *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의 인권, 노동, 환경, 반부패 4개 영역의 10대 원칙
 - ** 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)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지배구조, 인권, 노동관행, 환경 등 7대의제를 사회적 책임 이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지침 및 권고사항을 담고 있음
- (국내동향)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은 '사람중심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'를 강조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인권경영 실천 요구
 - ※ 201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「윤리경영(3점)」 지표에 '인권경영' 분야 포함
- (전사차원) 우리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권경영이 중요
 - 우리원과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사회적·도덕적 책임을 다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기관의 지속성장 담보

□ 추진경과

- '17년 윤리청렴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및 협의('17.7~9월)
- 인권경영헌장 제정 및 선포식 개최('17.9월)
-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이행계획 국가인권위 제출('18.11월)
- 우리원 주요사업 부문 인권영향평가 시범운영('18.12월)
- '19년 인권경영 추진계획(안) 수립('19.7월)
- '19년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(안) 마련 및 전문가 자문('19.8월)
- 인권영향평가 실시('19.7월~9월)
- 전 직원 인권교육('19.8월, 10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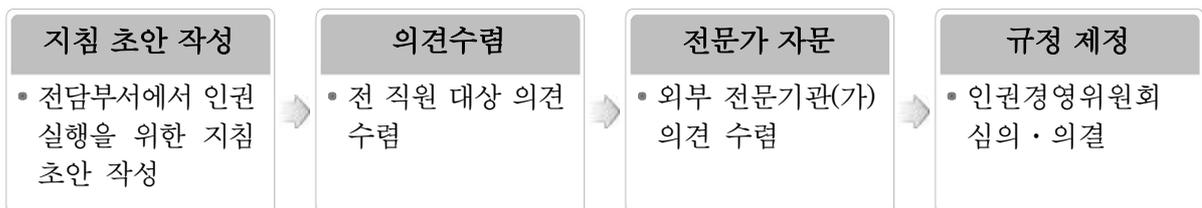
□ 인권경영 추진체계



1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

□ 인권경영 추진체계 구축

- 인권경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및 협업부서 지정
 - (전담부서) 감사팀
 - (기관운영 협업부서) 전략기획부, 경영지원부, 홍보부, 정보화전략부
 - (주요사업 협업부서) 사회참여지원부
-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
 - (목적) 내·외부 고객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등 체계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
 - (방법) 지침 제정을 위한 내·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및 전문가 자문



- (내용) 총칙·일반원칙에서 인권침해 구제까지 인권 관련 전 영역 포함

총칙 및 일반원칙	인권경영의 목적, 주요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 등
인권경영 체계	인권경영 선언, 전담부서 지정·운영, 인권교육 시행 등
위원회 구성·운영	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요건, 성립요건 등
인권영향평가	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및 결과 활용
인권침해 구제절차	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, 구제절차, 신고인의 신분보장 등

- **인권경영위원회(인권침해구제 기구) 구성·운영**

- (목적)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 및 의사결정 기구
- (역할) 인권경영 계획수립,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 개선 권고, 인권 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 등 **인권경영 정책 및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및 권고** 등
- (구성) 내부위원 3인(경영지원부장, 근로자대표, 감사팀장), 외부위원 4인 (대학교수, 변호사, 노무사 중 2인,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자 2인) 총 7인

- **인권교육 실시**

- (일반교육) 전 직원 대상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
- (전문교육) 필요 시 인권경영 담당자 대상 인권관련 전문교육 이수

- **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**

- **인권경영헌장 선포('17.9.27. 시행완료)**

- 기관장, 청렴위원회 및 전직원 참여로 선포식을 개최하여 공식화
- 사내 업무망 및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헌장 게재, 대내외 확산 추진

- **인권경영헌장 재점검 및 대내외 확산**

□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

- 기관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·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평가
 - (평가방법)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(10개 분야, 158개 지표)

<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종합통계>

연번	평가지표	지표수	관련부서
	총계	158	
1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30	감사팀
2	고용상의 비차별	17	경영지원부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16	경영지원부
4	강제노동의 금지	11	감사팀, 경영지원부
5	아동노동의 금지	14	경영지원부
6	산업안전 보장	17	경영지원부
7	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10	경영지원부
8	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	10	경영지원부
9	환경권 보장	18	경영지원부
10	소비자인권 보호	15	전략기획부, 홍보부, 정보화전략부

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

- 기관 주요사업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·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평가
 - (대상사업 선정/진단) 주요사업 부서와 협의를 통해 기관을 대표 하는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담당자 인터뷰, 설문조사 등 내부진단 과정을 통해 주요사업 평가지표 마련
 - (평가방법)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

3단계

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

□ 인권경영 실행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인권리스크 요인에 대한 방지조치 수립/시행

□ 인권경영 공개

- 인권경영 체계, 실태조사, 영향평가, 사업실행, 개선사항 등 인권경영 전(全) 과정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작성, 인권경영 최종보고서 경영공시

4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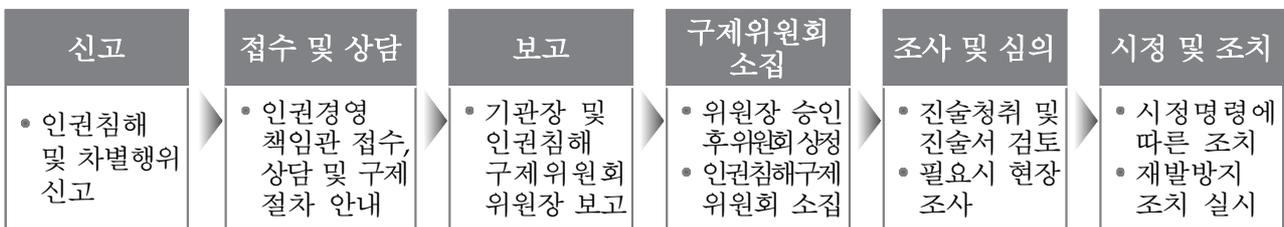
구제절차 제공

□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화

- 인권경영 이행지침 내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도화
- 인권경영위원회가 인권침해구제 기구 역할 수행, 홈페이지 kordi 신고센터에 인권침해 신고채널 구축 운영

□ 인권침해 구제절차 구축·운영

- 신고내용이 인권침해 행위로 확인될 경우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소집·심의·조치



* 신고내용이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 일반접수 등 조치를 통해 종결